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49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496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193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민규, 최용환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박성구

피고, 피항소인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7.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피항소인 8. H 주식회사

9. I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1938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G의 각 항소,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 가. 주식회사 J에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 내역표 중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 나.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식회사 J에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 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 나. 제2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 다.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 라. 피고 G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 마. 피고 주식회사 B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 바.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J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내역표 기재 각 채권양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같은 표 기재 각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양도사실의 통지 및 위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 각 채권양도의 취소 통지를 하라.

2)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517,059,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제2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주식회사 J에,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 각 채권양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같은 표 기재 각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양도사실의 통지 및 위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 각 채권양도의 취소 통지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전의 예비적 청구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J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및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구하는 원상회복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1)

4)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2)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내역 기재 각 채권양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같은 표 기재 각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양도사실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517,059,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나. 피고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다. 피고 G

제1심판결 중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3. 부대항소취지(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5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J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각 양도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한다.

2) 아울러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의 각 이행 내지 확인을 구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517,059,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제2예비적으로, 피고들은, J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④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K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피고 A는 K의 요청에 따라 J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는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이므로, 피고 A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 B, C

1) 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들이지 J이 아니므로, J의 K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부존재한다. 설령 J과 K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부존재하는 채권 또는 무효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 B, C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사해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 G

J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 G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J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무렵 그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이 4억 원을 넘었다. 피고 G이 J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것은 기존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채권 및 향후 추가로 대여할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피고 G 측은 J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은 뒤 2019년 4월 말경에도 J에 1,8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3. 31. ~ 2018. 6. 20. J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인 2019. 3. 12. ~ 2019. 4. 11. 당시 이미 '원고의 J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J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인 2019. 4. 19.경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당시 이미 원고의 J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J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J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재산의 표시
서울 성동구 O건물 P호 (이하 '이 사건 O 건물'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적극재산 합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L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Q에 대한 채무
R에 대한 채무(원금)
소극재산 합계
재산 합계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S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J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각 양도한 것은 J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록 피고들이 J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J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물품대금채무 또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위 물품대금채무 또는 차용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무렵 J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O 건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그 중 이 사건 O 건물에는 L 은행 및 Q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합계 16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 O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는 약 1억 4,000만 원(= 2019. 4. 16. 거래가액 17억 6,000만 원 -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J의 책임재산 중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가장 큰 비중(71.8%)⁶⁾을 차지하였다.

③ 그런데 J은 2019. 3. 12.부터 2019. 4. 11.까지 사이에 피고들 및 N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각 양도하였고, 그 총 양도금액은 합계 1,213,545,288원으로⁷⁾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

599,089,345원을 훨씬 초과한다.

④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4. 19. J은 만기가 도래한 기업은행 대출채무의 원금 5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기업은행 대출채무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들이지 J이 아니므로, J의 K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부존재한다. 설령 J과 K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부존재하는 채권 또는 무효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증인 S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K,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할 때는 'K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K 등을 '원사업자'로 하고 J을 '수급사업자'로 하는 물품납품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기본계약에 따라 K 등은 J에게 완제품 발주를 하고, J은 그 발주에 응하여 원자재 업체(피고 A, B, C 등 포함)에 원자재를 발주하여 원자재를 납품받은 뒤 완제품을 제작하여 K 등에게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J은 K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가 J에 제품을 발주할 때 제품의 제작에 사용할 재료의 수량과 단가, 원자재 공급처까지 지정한 사실 및 J이 제작할 완제품에 사용될 원자재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K가 직접 원자재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들이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J과 K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J이 K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들이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J과 K 등 사이에 체결된 위 물품납품 기본계약이나 그에 따른 각 물품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 G은 'J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기존 채권 및 향후 추가로 대여할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이 J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가액은 400,269,77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위 채권양도 후 피고 G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은 1,800만 원에 불과한 점, J의 대표이사인 X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사 제11호증)에 따르더라도 2019년 4월 말경 K가 추가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러 이미 사업을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J이 피고 G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J이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하여 피고 G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무자인 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J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는 “K가 J에 대한 추가적인 물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J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K가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 A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는 'J로부터 미수금의 변제조로, J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D은 '2017. 11. 12.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최초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K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올라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K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B는 'J이 물품대금(단추) 지급을 지체하자 채권양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도 'J이 물품대금 지급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옷감을 반품하자 즉시 변제 및 채권양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G은 'J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각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일 무렵에는 J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J의 책임재산 내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은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 A, B, C, D, G은 'J의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그렇다면 J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공탁자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곧바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2)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 B, C, D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 승소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로서, 위 각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인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J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원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상회복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중 1인인 J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을 받았음을 근거로,8) 그 전부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J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J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J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곧바로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상회복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상회복 청구 중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들이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은 아직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사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K로부터 이미 수령한 1,000만 원 부분은 제외한다. 위 1,000만 원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들인 피고들이 취득한 각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J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즉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J에 각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J에, “K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589,089,345원 중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 내역표 중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채권을 J에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있다.

5) 원상회복 청구 중 '피고 A에 대한 1,000만 원 가액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J이 K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68,852,450원 부분을 피고 A에게 양도한 이후에, K는 2019. 3. 27.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그

채권양수인인 피고 A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일부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수령한 수익자인 피고 A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A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중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A, G의 각 항소 및 피고 B, C의 각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중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

별지

1)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2. 1. 11.자)의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각 준비서면의 각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선행하여 보면, 원고가 제2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의 내용은 주문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취지 중 피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별지 목록 제2항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 각 채권양도의 취소 통지'를 하라”는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추가)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취지이다.

3)이 사건 O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2019. 4. 16.) 기준.

4)이 사건 O 건물에 설정되었던 L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억 원(2019. 4. 16. 매매와 동시에

말소되었다)이 포함된 금액이다.

5)이 사건 O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기준.

6) $[599,089,345\text{원} / (599,089,345\text{원} + 140,000,000\text{원} + 95,249,261\text{원})] \times 100 = 71.8\%$.

7)M은 가압류채권자이므로 그 가압류금액은 양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8)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름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